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 삭제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기간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기업인증 조항 삭제: 제9조제5항
- 나. 대행업체 대행기간 조정(3년→2년): 제9조제3항
- 다. 업무 담당이 정확하지 않은 용어 변경: 제9조의5제4항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및 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)
-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9조(분뇨수집·운반업)
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44조(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)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 및 제8조(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2. 12. 29. ~ 2023. 1. 18.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의결(2023. 1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 
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”를 “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하며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5제4항 중 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”를 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분노수집·운반 등의 대 행)</p> <p>①.·②.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<u>3년</u> 단위로 하며, 제9조의4의 평가결과 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 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<u>대행업체는 「사회적기업 육성 법」 등에 따라 대행계약기간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또 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 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 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생 략)</p> <p>⑦ (생 략)</p> <p>제9조의5(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)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를 두되, 업무담당 <u>주 사</u>가 된다.</p> <p>⑤~⑥ (생 략)</p>	<p>제9조(분노수집·운반 등의 대 행)</p> <p>①.·②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<u>2년</u> 단위로 하며, 제9조의4의 평가결과 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 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5(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를 두되, 업무담당 <u>팀 장</u>이 된다.</p> 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 
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이세진
연 락 처	02-3153-9265